

시될 수 있음

- 거주 기업이 체약 상대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하였어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

■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 시 신청인의 의무와 상호합의 절차와 여타 절차의 동시 여부를 다룸

- 신청인은 상호합의 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쟁점을 특정해야 하며, 신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특정 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 상대국 또는 양 체약 상대국의 해석을 명시하여야 함
 - 신청인이 상호합의 절차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하도록 하며 관련 조약의 특정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함
 - 룩셈부르크 또는 여타 관할국 법원의 관련 판결이나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
- 상호합의 절차와 국내 소송 절차, 상호합의 절차와 EU 중재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나, EU 조세분쟁해결지침(2017/852)하의 절차가 개시되면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는 개시될 수 없음

■ OECD Action 14 상호검토(peer review process)는 룩셈부르크 상호합의 절차가 최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, 징수 유예 권한 및 다년간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

- OECD는 Action 14 상호검토에서 룩셈부르크가 최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, 진행 중인 Action 14 상호검토의 일환으로 상호합의 절차의 개선점을 권고함
 - 2단계 상호검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은 1단계 상호검토에서 식별된 개선점을 거의 다 해결하였으며, 남아 있는 개선점은 양자조약상의 문제로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없음
 - 룩셈부르크의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

